

「연계정보 생성 · 처리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
일부개정안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
1. 개정이유

최근 빈번한 해킹 사고로 대규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동시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결합하여 특정인 식별 및 추적을 통해 명의도용,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 이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 · 보관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존 「연계정보 생성 · 처리 등에 관한 기준」에서 유예되었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· 보관 시행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,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부칙 제1조(시행일)의 [별표4]의 3.* 규정 시행일 변경

* [별표 4]의 3. :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 · 보관 · 관리에 관한 사항

o [별표4]의 3.의 시행일을 당초 2027. 5. 1.부터를 2027. 1. 1.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5-4호

연계정보의 생성 · 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연계정보의 생성 · 처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1조 중 [별표4]의 3. 시행일을 “2027년 5월 1일”을 “2027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<u>[별표4]의 3.</u> <u>4-2 및 6. 규정은 2027년 5월 1일부</u> <u>터 시행한다.</u>	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 . 다만, <u>다음 각호의 구분</u> <u>에 따른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</u> <u>날부터 시행한다</u> 1. <u>[별표4]의 3 : 2027년 1월 1일</u> 2. <u>[별표4]의 4-2. 및 6. : 2027년 5월 1일</u>